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 V >

—美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

8. 美트루먼大統領命令 10,096號에 따른 內部機構와 外部機關과의 運用에 대한 協力

審査會 會長傘下 事務局은 1950年 6月14日에 創設한 이래 最少의 職員과 經費로서 業務를 수행했다. 16名을 넘은적이 없는 人員이 직접 회장을 輔佐했다.

命令 10,096호 第3節 31項에 따라 전반적인 運用에 필요한 經費가 심사회에 參與하고 있는 各機關에서 據出되었다.

또한 회장의 要請으로 辯護士協會와 特許法協會가 또 委員으로 委囑되어 그들로 構成된 委員會와 國家製造業者協會의 특허에 관한 組織이 적극 협조했다. 따라서 특허관계 변호사나 專門家 團體, 그리고 産業界 등에서 많은 협조를 하게 된 것이다.

9. 政府所有 發明의 索引

政府가 所有 管理하는 發明이나 특허권에 관한 情報의 保管, 蒐集, 配布 등은 審査會 會長의 責務이다. 命令 10,096號에 따라 심사회 회장에 의하여 채택된 政策에 의거, 모든 정부기관이 소유, 관리, 實施許諾된 發明, 특허권은 索引을 붙여 그 寫本 등을 정부기관, 公共圖書館, 大學, 商業會議所, 科學·技術者 그룹, 産業 및 商業 團體 및 그 외의 관계기관에 配布한 후 保管活用토록 規定하고 있다.

발명의 색인은 심사회 사무국에서 정리, 보관하며 이 색인에는 정부가 정부의 利益이 있는 특허발명의 사본, 概要 分析, 拔萃文이 담겨있다.

特許證의 사본이 제제된 색인의 정보는 새 특허의 交付와 期限滿了된 것을 公布함으로써 정

부의 연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이용하게끔 되어있다.

색인에 記載된 발명은 産業上의 使用목적에 따라 拔萃 分類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意欲의 인 사업도 1957年 1월16일자 大統領命令으로 廢止되어 심사회장이 작성한 모든 記錄은 商務省으로 移管되었다.

10. 大統領命令 第10,096號의 運用에 대한 行政命令 第5號(1951年 4月26日)의 概念

1950年6月14日에 大統領은 行政 各機關의 代表者로 構成하는 國家公務員 發明特許審査會의 設置와 아울러 同 審査會는 該해 7월 10일에 1次 會議을 연 다음 每月 1回平均으로 月例會議을 열었다.

이어서 1951年4월26일에는 行政命令 第5號 (Administrative Order No.5)가 대통령의 承認을 얻어 實施되었다. 이 명령은 대통령명령 10,096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公務員 職務發明에 대한 統一의 行政規定이 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이 공포되자 심사회장은 운용에 관하여 意見이 提示되어 政府機關內에서의 研究開發 結果與否를 비롯해서 當該 行政管轄權下의 被傭者 與否, 發明의 構成 與否의 결정은 그 기관의 責任으로 限界를 지었다.

또한 그 기관은 會長에 의한 再審査를 條件으로 정부와 被傭發明者의 各 權利에 대해 獨自의 決定을 한 후 회장이 재심사하여 結論을 내리도록 정부 각기관은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事實과 情況에 관한 報告書를 회장에 제출한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 회장은 制度를 運用했다. 그 主要 指針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全權原은 발명자에 의해 留保된다.

가. 정부에 의한 時間, 資材, 施設, 施備, 資金 혹은 情報가 없고 또 발명이 발명자의 義務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경우

나. 정부의 顯著한 貢獻이 없으면서 雇傭을 통하여 被傭者가 어느 일에서 생긴 문제의 해결을 어떠한 形態로 發見했다는 것만의 理由로서 정부에 正當性을 主張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와 발명이 발명자의 公務의 一般的 分野에 관계하고 있는 정도가 낮거나 또는 발명에 대해 정부에게 實施許諾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발명자의 의무가 관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이유에 따라 정부에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다. 정부의 貢獻도가 낮거나 불충분하고 발명과 발명자의 공무와의 관계가 缺如되어 있는 사실을 反駁할 수 없을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權原은 발명자에게 留保되거나 實施權은 정부에 賦與된다.

가. 시간, 시설, 설비, 자재, 자금, 정보에 대한 정부의 공헌도는 없으나 발명자의 공무와 발명과의 관계가 間接的이라 해도 중요한 관계에 있을 경우

나. 정부의 공헌이 있고 발명자의 의무(職務)와 발명과의 관계가 直接的이며 讓渡를 正當化하기에 충분하나 정부에서 양도를 요구할 만큼 그 발명에 대해 충분한 關心을 갖지 않을 경우

다. 前項 나와 같이 양도를 정당화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실 또는 사정에 따라 양도의 要求가 公平하지 못하다고 判斷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經緯를 거쳐 1940년부터 56년까지 17년동안 정부직원발명의 權利關係處理推移는 첫 해인 40년에는 양도 37, 實施權 政府取得 197 등 合計 234件으로서 權利讓渡 比率은 15.8%였으나 56년에는 양도 368, 정부취득 431, 정부에 無關하다는 判定이 내린 150건을 합쳐 949건이 처리되어 그 比率은 38.8%로 增培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명령이 뜻하는 목적이나 심사회장의 運用上의 解釋에도 不拘하고 被傭者의 提議가 있는 事件만을 회장이 再審査하여 裁定하

는 경향이 었다.

農務省(Department of Agriculture)은 특히 정부에의 권리양도를 勸獎함으로써 526件的 권리 가운데 471건(89.6%)이 양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24건은 公共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海軍省은 1,661건 가운데 616건이 정부에의 양도가 요구됐고 3건이 公共에 提供된데 지나지 않는다.

심사회장의 行政命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2호와 5호를 들 수 있다. 2호는 外國特許政策에 관한 것이고 5호는 정부의 國內權利의 統一的 特許管理指針이다.

행정명령 2호는 1950년 9월6일에 공포된 정부의 出資研究로서 發生한 발명을 海外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最終的 實行可能計劃을 결정하는 措處이다. 그 내용인즉 1947년6월14일의 대통령명령 9865호 各條文 중 商務省을 심사회로 고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장은 정부의 防衛的 要求에 副應하기 위한 外國特許保護計劃의 改正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회장의 權限으로 이루어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特許防衛를 위하여 어느 발명을 外國에서 보호받느냐를 결정할 뿐더러 정부에 대하여 특허 보호의 必要性을 요구하고 이에 필요한 책임을 그 기관에 委任한다.

② 國內 產業界가 요망할 때는 商業上 크게 有效한 발명의 外國에의 출원을 保證함으로써 産業界의 利益을 守護하는 책임을 商務長官에 위임한다.

특히 2次大戰이 끝난 직후 外國에의 특허 출원을 위한 獎勵策을 검토하여 貿易, 軍事, 特許政策의 一環으로서 法制化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하겠다.

또한 日本도 戰前의 絲라린 經驗을 살려 1952년1월29일에 工業技術廳勤務發明規程을 制定하고 外國出資補助를 規制하였으며 76年度豫算에도 外國에의 플란트輸出에 力點을 두되 그 先驅的 役割을 工業所有權에 依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政策方向이 었보인다.

(계 속) (C 記)